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82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조승래 · 김성희 · 채현일
이주희 · 박성준 · 김 윤
서미화 · 노종면 · 이정문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범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0조

제7항 · 제8항 신설, 제268조제4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수(收受)·제공 의사표시·약속 또는 승낙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價額)(이하 “수수가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수가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7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2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수(收受)·제공 의사 표시·약속 또는 승낙한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價額)(이하 “수수가액”이 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가액이 5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수가액이 3천만원 이상 5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7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u><신설></u>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第268條(公訴時效) ① ~ ③ (생략) <u><신설></u>	----- ----- -----. ② (현행과 같음) 第268條(公訴時效)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u>
--	--